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마약류범죄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 신설〉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02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은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7.
3. 회 부 일 : 2025. 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그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마약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렇기에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를 적발하여 그에 사용된 계좌를 발견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마약류 관련 범죄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 범죄에 관련된 불법수익의 수수·보유·은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두어,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계좌명의인의 권리보호도 조화시키려는 것임 (안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마약류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신설하여, 마약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또는 그 유래 재산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은닉·도피를 막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제8장 마약류범죄이용계좌의 지급정지</u> <u>제79조(지급정지) ①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수수·보유·은닉에 활용된 계좌(이하 “마약류범죄이용계좌”라 한다)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즉시 해당 마약류범죄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u>

현행	개정안
<신설>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마약류범죄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절차·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79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마약류범죄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개정안
<신 설>	1.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제81조(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 기) ① 명의인은 해당계좌가 마약류범죄이용계좌가 아니라 는 사실을 소명하여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접 수한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한 수사기관에 이의제기 접수 사 실을 통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 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조회를 요청 받은 수사기 관은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심사함에 있어 해 당 계좌가 마약류범죄이용계좌

현행	개정안
<u><신 설></u>	<u>가 아님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견 조회 후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제82조(지급정지의 종료)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류범죄이용계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를 종료하여야 한다.</u> <u>1. 제81조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의 결과 지급정지의 종료가 결정된 경우</u> <u>2. 더 이상 지급정지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수사기관이 그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u> <u>3. 지급정지 개시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마약류범죄이용계좌와 관련된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기소중지 또는 참고</u>

현행	개정안
	<u>인증지된 경우는 제외한다.</u> <u>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과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u>

□ 현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은 몰수·추징 등을 통해 마약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사후 환수할 수 있는 제도¹⁾를 두고 있으나, 마약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계좌에 대한 수사단계의 지급정지 제도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신에 현행법은 몰수·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몰수보전명령²⁾과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³⁾을 규정하고 있음⁴⁾. 특히 기소 전

1)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된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

제16조(추징)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追徵)한다.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또는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2) 마약거래방지법 제33조(몰수보전명령) ①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

몰수보전명령은 공소제기 이전의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몰수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시에 채권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을 몰수보전명령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⁵⁾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해당 재산을 가진 자에게 명령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가능하도록 하고⁶⁾ 있음.

○ 다만, 몰수보전명령은 몰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때의 상당한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⁷⁾의 상당한 이유와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으며⁸⁾

사건에 관하여 이 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청구를 받아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함으로써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3)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추징에 대해서도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추정보전명령)와 제53조(기소 전 추정보전명령)를 규정하고 있음.

5) **마약거래방지법 제40조(채권의 몰수보전)** ③ 채권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6) **마약거래방지법 제35조(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②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그 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7)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8) 법무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해설』, 2002, p.228

이는 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할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함⁹⁾. 따라서 범죄와의 관련성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존재하고 몰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을 충분히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검사가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의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공백을 이용해 피의자가 채권이나 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현금화하여 은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한계가 있음¹⁰⁾.

□ 개정안은 안 제79조에서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수수·보유·은닉에 활용된 계좌(이하 “마약류범죄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은 즉시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마약류범죄는 마약의 공급·소비와 범죄수익의 자금세탁 등 전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상 조직범죄의 양상을 띄는 경우가 많으며, 조직범죄집단은 마약류범죄 등으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자금세탁하여 다른 불법행위를 하거나 합법적인 사업에 투자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므로, 조직범죄의 경제적 유인과

9) 이재상, 조균석, 이창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2, p.176

10) 고경희,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의한 지급정지의외제도의 문제점”, 「법학논문집 제39집 제2호」, 2015, p.164

기반이 되는 범죄수익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¹¹⁾).

○ 현행법의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은 몰수 대상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할 필요가 있으나, 개정안은 마약류범죄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해 신속하게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게 하여 마약류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이동·세탁을 조기에 차단하고 몰수·추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와 함께 안 제81조는 지급정지 후에도 계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범죄와 무관함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으며, 안 제82조에서는 일정 기간 내 공소제기가 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다만, 수사기관이 마약류범죄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추상적 기준에 의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도 해당 계좌가 마약류범죄이용계좌가 아님이 명백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지급정지 종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명의인의 권리구제가 형식화될

11) 신의기 등 6인, “마약 및 조직범죄의 형사정책적 현안과 종합적 대응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22-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p.299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마약범죄가 조직화·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중지·참고인중지 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수사기관이 종료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지급정지가 종료되지 않는 등 재산권 침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현행법이 규정한 몰수보전명령의 경우 몰수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지거나 몰수보전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법원이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¹²⁾을 참고하여, 계좌 지급정지에 대해서도 사후통제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하여 ① 지급정지 요건과 지급정지 해제 요건이 지나치게 수사편의적이고, ② 지급정지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며 지급정지 종료도 제한적인 사유에 한정하고 있고, ③ 마약범죄 수익 보전의 필요성이 계좌명의인의 위와 같은 재산권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고 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공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④ 계좌지급정지를 감독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2) 마약거래방지법 제42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 ① 법원은 몰수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지거나 몰수보전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그 사람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변호인을 포함한다)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몰수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070